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25

발의연월일: 2022. 9. 8.

발 의 자:이철규·이인선·정운천

박덕흠 • 태영호 • 한무경

최영희 · 김학용 · 박정하

노용호·양금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향후에도 공급 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현행법이 전면개정된 2019년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 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 응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 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사업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 정화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 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바.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
- 사.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 아. 세제지원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안 제23조).
- 자.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 함(안 제23조의2 신설).
- 차.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3 신설).
- 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 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 련합(안 제23조의4 신설).
- 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 신설).

- 파.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 (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하.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1항).
- 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
- 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부터 제67조).
- 더.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7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항 신설).
- 러.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안 제77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한다.

제1조 중 "강화"를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 제8조제1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제1항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을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 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비상 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 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 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경쟁력"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 제23조의2(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 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 4.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품목별 목표
 -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 3. 정부 지원 필요성
 -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술개발
 -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 증
 - 4. 재고확대

-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 6. 국제협력
-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 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 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지원
 - 4.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협의체(이하 "공급망협의체"라하다)를 구성·유영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공급망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 목의 국내 총 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 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 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 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

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51조제1항 중 "협력모델에"를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로, "협력모델의"를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로 한다.

제61조 중 "강화"를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제64조 중 "핵심전략기술"을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한다.

제65조 중 "핵심전략기술"을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한다.

제66조 중 "핵심전략기술"을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한다.

제67조 중 "핵심전략기술"을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중 "사람과"를 "사람,"으로, "직원은 「형법」 제129조"를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 위한 특별조치법 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 제1조(목적) ------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 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u>와 공급망 안정화</u>--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 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 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 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u>강화</u>, 핵심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 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제8조(소재·부품·장비 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위원회) ① ----

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인
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
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명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 책무) ①
강회
 및 공급망 안정화
· ②
소재·부품·장비
<u> </u>
<u> </u>
<u> 0 ~1</u>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11. (생 략) <u><신 설></u>

<신 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설>

- 1. ~ 11. (현행과 같음)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 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에 관한 기본방향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야 한다.
-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제20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 주수·합병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u>강화</u>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
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
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
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
수·합병 등의 지원) ①
<u>강화</u>
<u>및 공급망 안정화</u>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 쟁력 <u>강화</u>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수·합병등의 촉진) ① 7 (생 략)
 -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3
	<u>강화 및 공급망 안</u>
	<u> 정화</u>
제	21조(인수·합병등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2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
	목과 관련된 국내외
	③ (현행과 같음)
제	21조의2(비상 시 해외생산품목
	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 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 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 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 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 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 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u>경쟁</u>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수있다.

<신 설>

<신 설>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	·정성-
· 제4장의2 소재·부품·장비산	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23조의2(소재·부품·장비	공급
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	네12조
의2에 따라 선정한 공급명	<u>망안정</u>
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ረ	신속하
게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청	하여야
<u>한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제 <u>1</u>
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기	<u> </u>
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됨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 발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 위기 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 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u>것</u>

- <u>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u>한 법률」 제4조에 따른</u> 공공기관
- <u>나. 「민법」 제32조에 따라</u> <u>설립된 법인</u>
-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 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 원
- 4.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

 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 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 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품목별 목표
 -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 3. 정부 지원 필요성
 -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u>1. 기술개발</u>
 -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 <u>4. 재고확대</u>

-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6. 국제협력
-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1 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 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 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절 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 능검증·인증·실증 지원
- 4.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 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 재·부품·장비 공급망협의체(이 하 "공급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공급망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총 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증설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 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 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 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 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 쟁력 <u>강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 ~ ⑥ (생 략)
- 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 (생 제략)
 - ②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u>수 있다.</u>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	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금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	(د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	시
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
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	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
<u>다.</u>	
∥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	발
사업의 실시 등) ①	
<u>강화 및 공급망 안정</u> :	화
	- –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125조(국제협력사업) ① (현	행
과 같음)	
2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략)

③ (생략)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u>협력모델에</u>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
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
산 활동과 관련하여 <u>협력모델</u>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
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 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u>강화</u>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u>.</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
의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u>, , , , , , , , , , , , , , , , , , , </u>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 전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저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
한 특례)
핵심전략기
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따라 선정된 <u>핵심전략기술</u>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 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 전략기술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증설·이전에 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

	<u>핵심전</u>	략기	<u>술</u>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	,
제	66조(「산업안전보건법」		관
	한 특례)		
		핵심	<u>전</u>
	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	품 <u>목</u>	
제		심사	케
.,	관한 특례)	- ,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		<u>성</u>
	품목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 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폭 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신 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저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u>사람과</u> 제76조에

<u>.</u>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
행과 같음)
2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
<u>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u>
<u>운영</u>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사란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의 임원 및 <u>직원은 「형</u>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u>직원과</u>
제2	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
의	직원은	「형법	」 제127조
<u>및</u>	제1293	<u>ح</u> ــــــ	
		·- .	